

서식 제1호 (제11조 관련)

자본재공제조합 작성란		
인감대조	담당	부서장
약정일자 : 년 월 일		

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

자본재공제조합 귀중

출 자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조합원	<input type="checkbox"/> 품질조합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뿌리조합원
약정인 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①	연대보증인 (대표자 또는 실소유주 개인자격) ②	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③
연대보증인 (법인 또는 개인기업체)		연대보증인 (개인)	
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①	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③		
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①	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③		
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①	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③		

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.

약정인은 자본재공제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과 다음 각 조항에 따라 이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으로부터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에 대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, 연대보증인은 약정인의 채무를 약정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제1조(보증한도액) 약정인의 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한도액은
一金 원整 ⓧ (₩)으로 한다.

제2조(약정유효기간) ①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약정인이 조합과 거래한 보증의 보증기한까지로 한다. 다만,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가 완전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②조합은 약정 유효기간 이내라도 약정인의 신용변동, 환율변동 등으로 사전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업무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제3조(보증서 등의 발급) 약정인에 대한 보증금 등의 보증서는 제1조의 보증한도액 및 제2조의 약정유효기간 내에서 약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발급한다.

제4조(부대채무) 귀 조합에서 지급한 체당금,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 조합 소정율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하겠음.

제5조(담보) ①귀 조합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로 귀 조합 소정 규정에 의한 약정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의 약정인의 출자증권 및 귀 조합에서 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겠음.

②귀 조합과의 거래상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현재 또는 장래 제공하는 담보는 모두 그 담보하는 채무외에 이 약정서에 의하여 보증받은 금액을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함.

제6조(보증료) ①보증의 방법은 귀 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귀 조합 소정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보증료를 납부하겠음.

②보증기간이 연장되거나 보증금액이 추가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보증료를 추가납부 하겠음.

제7조(한도초과예치금) 보증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귀 조합에 한도초과해당액을 담보로 예치한데 대하여는 금리를 청구하지 아니하겠으며 예치금은 본 약정에 의한 담보외에 귀 조합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약정인의 귀 조합에 대한 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.

제8조(계약 및 약정에 의한 의무이행) 귀 조합의 보증에 관하여는 수요자와의 입찰에 관한 의무, 계약상의 의무 및 이 약정상 약정인의 의무를 다하겠음.

제9조(보증내용 변경에 대한 연대보증책임) 본 약정서에 의하여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기간, 보증금액 등 보증내용변경의 사유로 본 약정기간 경과 후에 약정인의 요청에 의하여 귀 조합이 추가 발급하는 보증서 등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겠음.

제10조(보고의무) 약정인이 보증상대처로부터 계약의 체결 또는 하자(보수)의 청구를 받았거나 각종 보증금액에 대한 납입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 또는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귀 조합에 보고하겠음.

제11조(통지의무) 귀 조합의 보증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와 약정인 사이에 계약의 변경, 해약 또는 사고이월 등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귀 조합에 통지하겠음.

제12조(면책사항) ①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사용한 인장이 미리 귀 조합에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여 취급상 보통의 주의로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한 때에는 인장의 도용, 위조, 기타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겠음.

②어음요건의 불비나 어음을 무효로 하는 기재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어음면 기재금액의 변제책임을 지겠음.

제13조(사전구상)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귀 조합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없이 당연히 사전 상환채무를 부담하여 지체없이 변상하겠으며, 귀 조합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 없음.

1. 귀 조합 규정이 정하는 보증배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2. 귀 조합에 대한 이 약정 및 기타 약정상의 의무나 보증상대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귀 조합이 인정할 때
3. 귀 조합의 채권이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귀 조합이 인정 할 때
4.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귀 조합이 인정할 때

제14조(배상) 귀 조합이 보증한 금액을 보증상대처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 조합에 배상하겠음.

제15조(과태료) 제14조의 배상금을 귀 조합에 납부할 때에는 보증금 납입일로부터 귀 조합 소정율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겠음.

제16조(거래정지)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을 귀 조합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귀 조합에 대한 약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약정인에 대하여 각종 보증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의가 없음.

제17조(변제충당) 약정인이 이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귀 조합은 사전의 통지와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담보로 귀 조합에 양도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의 채권을 납입금에 충당하거나 귀 조합에 제공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 기타 보증제공자의 출자증권 및 제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하여 납입금에 대한 배상 및 부대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로 납부하겠음.

제18조(연대보증인의 보완) 연대보증인이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상실이 우려될 때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을 갱신하겠음.

제19조(연대보증인의 책임) 연대보증인은 귀 조합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정인과 연대하여 본 약정이행의 책임을 지겠음.

제20조(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) 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조합이 취득한 신용정보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.

제21조(약정갱신에 따른 책임한계) 이 약정의 유효기간 이내에 약정이 갱신될 경우, 약정갱신일 이후 발행된 보증서에 대한 보증책임은 갱신된 약정에 따른다. 다만,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서 발급시점의 약정에 따른다.

제22조(합의관할)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귀 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 다만, 약정인 또는 조합이 관할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다.